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3월 25일 시행 1년의 계도기간→준비기간돼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현장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조차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축산 농가들은 1년의 기간을 벌게 된 것일까? 현장에서는 1년의 기간이 계도가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준비기간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비사항을 알아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봤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규모는 가금의 경우 가금 200㎡~3,000㎡이고, 허가규모는 3,000㎡ 이상이 해당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퇴비화기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관련 별표3)

종류	항목	기준		시행일
모든가축	부숙도*	1,500㎡ 미만	부숙 중기	'20.3.25
		1,500㎡ 이상	부숙 후기완료	
	함수율	70%이하		'15.3.25
돼지	구리	500 mg/kg 이하		
	아연	1,200 mg/kg 이하		
소·젓소	염분	2.5%이하		

* 부숙도 종류 :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이 제도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계도기간이 1년 부여됐고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 미 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그러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계도기간 중 이행계획서 작성해야

그렇다면 농가가 부숙도 이행을 위해 계도기간 중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퇴비 부숙도 시행을 대비해 정부에서는 농가 이행 지원 방안을 세우고 이를 시행한다. 시군별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 퇴비 부숙도를 검사하고 퇴비 부숙 관리 기술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이 이뤄진다.

오는 11월 15일까지 시군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신청서, 부숙도 준수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시군에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 후 기준 미충족 농가와 컨설팅 신청 농가에 대해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군에서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타용도 사용 퇴비사 원상복구 명령 및 지도점검, 컨설팅 신청농가에 대해 퇴비사 증개축, 장비의 구입이나 임대, 또는 위탁관리 등을 안내·지원한다. 시도(시군)에서는 관련 지원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부사업과 시도·시군 사업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향후 계획

- 시군별로 농가대상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 접수, 타용도 퇴비사 지도점검 및 원상회복 명령 (~11월 15일)
* 시군은 신청·접수 결과를 시도 및 축산환경관리원에 동시 제출
- 시도별 퇴비 부숙도 담당자 교육 장소 및 일정 확정 (11월 8일)
- 퇴비 부숙관리 리후렛 및 동영상 배포 (11월 15일, 농협)
*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11월 8일, 축산환경관리원)
- 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계획 수립, 제출(11월 22일 지자체)
- 지자체별 부숙도 시행 지원계획 수립 (11월 29일, 지자체)
- 지자체별 농가 퇴비사 확충 및 장비 구입, 퇴비유통조직 육성, 마을형퇴비자원화시설 등 퇴비 부숙도 지원방안 수립

오리분뇨 제때 치우기 힘들어

당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줬고 1년의 계도기간을 또 부여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다르다. 지자체에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할 인력과 장비 조차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휴지기를 겪고, AI 특별방역기간 연장에 강화된 입식 조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농가들에게는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리업계에 따르면 오리의 경우 대다수 농가들이 퇴비를 위탁처리하고 있어 부숙도 검사에 민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예전에는 돈을 받고 비료업자들이 수거해가던 오리분뇨가 최근에는 폐기물 취급을 받으며 농가들이 수십만원을 지불하고도 제때 치우지 못하고 순번

과태로 부과기준(가축분뇨법 시행령)

구분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검사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퇴비의 처리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오리농가들의 현실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농가, 현장에서선 갖가지 애로사항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더욱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가 퇴비 부숙도 적용에 따른 오리농가 애로사항 조사에 기초하면 농가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가처리를 위한 퇴비사 개축이나 증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었다.

전남 고창의 한 오리농가는 현재 자가처리를 하며 퇴비사가 있지만 퇴비사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건폐율 제한으로 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축 사육제한 구역 내 퇴비사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 없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얘기다.



전남 보성에서 퇴비를 자가처리하고 있는 한 농가는 “퇴비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사 옆에 땅을 만들어 퇴비를 모아 미생물제제를 이용해 부숙하고 살포하고 있다”며 “신축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접수가 마감돼 진행이 불가능한 농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문제는 부숙도 준수를 위한 시설과 장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지적되는 문제다. 퇴비사를 갖고 자가처리하고 있는 전남 부안의 한 오리농가는 “교반시설이 필요해 1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장 현대화 사업으로 고상식 축사를 지어서 여유자금이 없다”며 “부숙을 위한 통풍시설, 교반시설 등의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보조율상향·지원조건 확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설치제한해제 설치제한해제불가지자체는부숙도 검사제외

자가처리를 하는 농가뿐 아니라 위탁처리 농가들도 고충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왕겨의 함량이 많고 부숙이 잘 되지 않는 오리 분뇨의 특성상 위탁처리업체에서 수거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업체가 위탁계약을 작성하는 비용으로만 300만~500만원 가량을 요구한 사례도 조사됐다. 실제 처리와 무관하게 계약서만 작성하는 비용이라는 것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전남 강진의 한 오리농가는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치우는데도 오리 분뇨를 제때 가져가지 않고 있어 문제인데다 농가소유의 장비를 이용해야 하고 심지어 위탁업체가 계속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은 양분총량제 문제로 위탁처리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리농가 부숙도 준수 위한 시설·장비 부족 위탁처리 농가, 미생물제·교반장비 지원해야 위탁처리업체 불공정행위 관리감독 강화도

보조사업 확대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해야

한국오리협회는 정부에 이같은 문제를 전달하고 보조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보조율 상향 및 지원조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비 20%, 지방비 20%인 것을 보조 8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비부숙도 시행 농가들이 필요한 신규 보조사업을 마련해 시행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지적이 있는 부분은 가축분뇨법상 분뇨처리시설은 제한대상이 아니므로 퇴비사 설치제한이 해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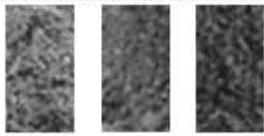
이와 함께 오리분뇨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오리분뇨가 잘 부숙되지 않아 위탁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가처리 농가 외에도 위탁처리 농가에 대해서도 미생물제와 교반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서 지적된 계약서 작성시 비용을 요구하는 등 위탁처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협회의 한 관계자는 “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을 받지 못해 기한내 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하지 못하거나 제도적 여건상 부숙도검사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농가들에 대한 규제가 아닌 자원순환과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농가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개념으로 정책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가 신청서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자가체크)

농가명: / 축종(사육두수):
주 소: 도 시·군 읍·면 리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수
관능평가항목	① 색깔 & 형상 (20점)	축분과 유사한 색깔 및 형상(2점) 	축분과 퇴비의 중간 색깔 및 형상(3~11점)  5점 8점 11점 * 부숙완료 퇴비와 비슷한 정도에 따라 점수 배정	갈색 또는 흑색을 띠고 축분의 형상이 완전 소멸(12~20점)  * 색과 입자가 고르고 균일한 정도에 따라 점수 배정	
	② 냄새 (20점)	아주 강한 축분냄새를 느낄 정도(2점)	축분냄새를 알 수 있는 정도(3~11점) * (5점) 축분냄새 식별, (8점) 약간의 축분냄새, (11점) 미세한 축분냄새	축분냄새 완전 소멸 및 흙냄새 등 퇴비냄새(12~20점)	
	③ 수분 (15점)	70% 이상(2점)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많이 나옴	60% 전후(3~9점)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약간 나옴	50% 전후(10~15점)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스미지 않음 부스러기가 떨어질 정도	
농가 기록	④ 퇴비화 기간 (20점)	가축분 자체 20일 이내(2점)	20일~6개월 미만(3~11점) 기간(일) 20~60 61~120 120~180 점수 5 8 11	6개월 이상(12~20점)	
	축분 + 수분조절재 20일 이내(2점)	20일~3개월 미만(3~11점) 기간(일) 20~30 31~60 61~90 점수 5 8 11	3개월 이상(12~20점)		
항목	⑤ 뒤집기 횟수 (10점)	2회 이하(2점)	3~6회(3~6점) * 퇴비화 기간 동안 뒤집기 횟수	7회 이상(7~10점)	
	⑥ 강제통기 (10점)	통기 안함(2점)	통기상태 보통(3~6점) * 퇴적송풍식: 간헐적 운영 정도에 따라	통기상태 양호(7~10점) * 기계식교반식: 주 3회 이상(10점) * 퇴적송풍식: 상시 가동(10점)	
가점항목(발생시)	⑦ 부숙중 최고 온도 (5점)	50℃ 이하(2점)	50~60℃(3~4점)  <측정방법> ▶ 퇴비더미 내 중앙지점 온도 측정 ▶ 철봉온도계 등 활용	60℃ 이상(5점) 	
	⑧ 방선균 여부 (5점)	없음(2점) 	보통(3~4점) —중간 정도—	많음(5점)  	
점수 합계	미숙·부숙초기 40점	부숙중기 40~59점	부숙후기 60~80점	부숙완료 81점 이상	

* 퇴비더미 내부(얕은 층)의 방선균 생성여부